

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·공고

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-111호(2010.04.19.)로 결정 고시된 “검단3구역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”에 대하여 「도시개발법 시행령」 제12조제3호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중대하다고 인정되어 「도시개발법」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람·공고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오니,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3. 12. 30.

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


1.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

- 가. 구역명칭 : 검단3 도시개발구역(변경없음)
- 나. 위 치 :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133-3번지 일원(변경없음)
- 다. 면 적
 - 당 초 : 524,004㎡
 - 변 경 : 524,562㎡
- 라. 시행기간 : 실시계획인가일 ~ 환지처분일(변경없음)
- 마. 용적률 및 고도제한
 - 당 초 : 170.54%, 51m이하
 - 변 경 : 179%, 85m이하
- 바. 기타사항 : 공람장소에 비치된 공람도서 참조

2. 시행자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

- 가. 시 행 자 :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(변경없음)
- 나. 시행방식 : 환지방식(변경없음)

3. 공람기간, 공람장소 및 의견 제출방법

가. 공람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
나. 공람장소 :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개발과 (☎ 032-560-4783)

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출장소 (☎ 032-560-3203)

다. 의견제출 방법 : 공람기간에 의견서(서면) 제출